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11호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 1 4 6 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조	례 제 1 4 6 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조	례 제 1 4 6 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조	례 제 1 4 6 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5
○ 조	례 제 1 4 6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조	례 제 1 4 6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22
○ 조	례 제 1 4 7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25
○ 조	례 제 1 4 7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27
○ 조	례 제 1 4 7 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규 칙

○ 규	칙 제 9 7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32
○ 규	칙 제 9 7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4

훈 령

○ 훈	령 제 3 4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63
-----	---	----

공 고

○ 공	고 제 6 2 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3-307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 · 공고	75
○ 공	고 제 6 6 7 호 (가칭)논현도서관 건립공사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공개	78
○ 공	고 제 6 7 5 호 도시·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석촌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	80

○ 보건소공고 제 4 4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82
○ 보건소공고 제 4 5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83

고 시

○ 고	시 제 4 2 호 도로명주소 고시		84
-----	--------------------	-------	----

회
람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8년 3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46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전단 중 “일반주택은 30내지 60세대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은 60내지 100세대 구성한다.”를 “30내지 100세대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후단 중 “다만, 자연부락 등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세대수를 가감”을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호 통은 “4~10개반으로 구성하며, 세대수는 일반주택은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을 통은 “2~8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장,”을 “통장을 두고,”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통장 위촉이 어려운 경우 관할 동의 해당 통 주변의 주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 7. 마을가꾸기 추진사업 협조·지원

제8조의2 중 “개최하고 반장이”를 “개최할 수 있으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반장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반의 확정기준 완화 : (안 제3조제1호,제2호)
- 반장 위촉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 : (안 제5조제1항)
- 통·반장의 위·해촉 기준 개정 : (안 제5조제2항제1호)
- 통·반장의 임무 신설(안 제7조제6호,제7호)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8년 3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46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을 “총괄재산관리관을”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나목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27조제3항제3호 본문 중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를 “경우”로 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지평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1호부터 5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4항 후단의 산식을 삭제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를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6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를 각각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9조제1항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3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전단 중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를 각각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를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를 “매각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 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9조제4호 중 “경우에 한하여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를 “경우”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를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62조의2 중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를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65조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속된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그 계약 및 허가의 갱신 전까지는 기존의 사용료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해석상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4조, 제30조, 제39조)
-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 (안 제31조, 제65조)
-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용어의 명확화(안 제2조, 제27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9조, 제62조, 제62조의2)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8년 3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46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증명에 대한 신청 등을 한사람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 사실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건	1,000원	
(2)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건	1,000원	
(3)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신청	1건	2,000원	
(4) 휴·폐업 사실 증명	1건	500원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원	
(2) 토지대금완납증명	1건	300원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건	800원	전자민원(인터넷) 무료
4. 회계에 관한 증명			
(1) 납품실적증명	1통	300원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	1통	300원	
(3) 건설공사(용역) 기성실적 증명	1통	300원	
5. 기타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필지	800원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4)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00원	
(5)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300원	
6. 무인민원 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토지(임야)대장	1필지 1장 초과마다	400원 100원	

[별표 3]

정보공개 수수료 (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증명등수수료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세목별과세증명을 전자민원(인터넷)으로 신청시 무료 : [별표 1]
- 정보공개 수수료의 전자파일 복제 시 무료 : [별표 3]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8년 3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46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미용업·미용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판매업
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
4.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과 개발 육성지원
2.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
4.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이·미용사업, 화장품 사업 등 뷰티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뷰티산업 관련 행사 등 사업을 활성화 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뷰티산업"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
-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안 제4조)
 -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과 개발 육성지원
 -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
 -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업무의 위탁(안 제5조)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8년 3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46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을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 1”을 “제2조제1항제16호 별표 1”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3조, 제4조,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을 “법 제5조, 제6조,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구 분	허 가 요 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폭 16m이상인 도로에 부지 일면의 길이가 20m이상 접할 것. 2.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할 것. 3.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가목1)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거리의 2배를 적용할 것. 4. 충전사업장의 대지 및 저장, 충전설비는 대표자의 소유 또는 임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 경우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락서가 있을 것.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상 설치 가능한 지역 중 허가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는 용기보관실 38㎡, 사무실은 18㎡, 전용주차면적 46㎡ 이상을 확보하고,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설치는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된 건물일 것. (다만, 1종 보호시설 및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설치가 불가능함)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신규허가 시 업소 상호 간 안전거리는 부지경계 간 직선거리 1,000m 이상을 유지할 것. 5. 일과 종료 후 가스사고발생에 대비하여 1인 이상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에 상주시킬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 간 일정장소에서 야간 근무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 상주시켜야 하며, 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의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6. 용기보관실의 용도는 관련법상 설치 가능한 용도(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보다 강화된 규제는 완화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동구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별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요건 중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을 상위법령에 준하여 적용 (20톤 초과 ⇒ 삭제) (안 별표)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8년 3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46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규모)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의 시설분담금 분담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정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2.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가스의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보조대상의 선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의 형평성 및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상한규정을 삭제함(제8조)
-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균등지원하지 않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원함(제9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8년 3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47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를 “해당 사업연도”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매 회계연도의”를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으로, “회계연도”를 “사업연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

☐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시기 조정 (안 제9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8년 3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47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 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2단식, 다단식에 한함)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부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으로, 노후 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단식, 다단식 주차장치에 한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적용(안 제18조의3제1항, 신설)
-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8년 3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47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10m”를 “10미터”로 하며, 같은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담배연기가 기관지염, 폐렴과 같은 질병의 발병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심장기능 저하, 돌연사 위험, 학습장애, 중이염 등의 많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됨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 하고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각 시설로 부터 10미터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 지정
(안 제4조 제1항)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8년 3월 30일

남동구 규칙 제97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본청의사무분장표 (제8조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획 예산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기구 직제 및 정원관리(공무직근로자 포함)		
	4.	조직 및 인력 진단		
	5.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6.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총괄		
	7.	지시사항 처리총괄(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등)		
	8.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9.	구정발전시책 및 제안(창안)제도 운영		
	10.	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1.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		
	12.	사무의 위임·위탁 및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13.	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		
	14.	정부3.0 추진 총괄		
	15.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무		
	16.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자매결연 사업 포함)		
	17.	공무 국외여행 추진		
	18.	구청 백서 발간		
	19.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20.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21.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무		
	22.	국·시비 보조금 운영		
	23.	예산의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에 관한 사항		
	24.	투자 심사에 관한 업무		
	25.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사무		
	26.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		
	27.	예비비 및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28.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29.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30.	예산 배정에 관한 사무		
	31.	예산의 전용, 이체, 이용, 변경사용		
	32.	기금운영 총괄조정		
	33.	지방채무 관리에 관한 사무		
	34.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무		
	35.	민자 유치사업 지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6.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 총괄 조정		
	37.	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38.	성과관리제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무		
	39.	국정평가 등 외부평가 관리에 관한 사무		
	40.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41.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42.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의 법제심사		
	43.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 공포		
	44.	고시, 공고, 훈령, 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45.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업무		
	46.	의회 운영 지원		
	47.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업무		

공영개발 사업단	48.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
	49.	통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50.	통계의 심사, 통제, 조사, 분석, 공표
	51.	통계 자료의 수집 및 간행물 발간
	52.	산업, 광공업, 농·어업, 사업체, 인구주택 총조사 등에 관한 업무
	53.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
	54.	공모사업에 관한 사무
	55.	용역의 심사 및 관리
	56.	외부재원 확보에 관한 사무
	57.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
	58.	외부재원 재투자에 관한 사무
	59.	당면 현안사항 및 사업부서 추진사업 총괄 관리에 관한 사무
	1.	소래 국가어항 개발
	2.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한 업무
	3.	연안정비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업무
	4.	연안정비사업 시행
	5.	연안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시공 및 감독
	6.	소래구역(특별계획구역) 개발 및 정비 사업
	7.	소래구역(특별계획구역) 건축행위(허가,신고 등) 가.부 결정 및 불법 건축행위 단속
	8.	소래 국가어항구역 건축행정 업무
	8-1	건축행정 건실화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8-2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8-3	신발생 위법건축물(무허가) 단속·정비 등에 관한 사무
	8-4	세외수입(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사무
	8-5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8-6	건축허가·신고관련업무에관한사항
	8-7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8-8	공작물 축조 신고 등에 관한 사무
	8-9	건축물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업무
	8-10	건축물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9.	소래갯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
	10.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남동구 전략 사업
안전 총괄실	1.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2.	안전문화·의식 진흥 정책에 관한 사무(주민 안전 교육 및 홍보)
	3.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4.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5.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6.	주민안전정책 총괄
	7.	재난관리 기금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8.	전시 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9.	재난안전관리업무 실태평가 업무 총괄
	10.	재난 공시에 관한 사무
	11.	기타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12.	특사경 지원 및 업무 총괄
	13.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운영
	14.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상황판단회의
	15.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총괄
	16.	재난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7.	자연재난 총괄복구계획 추진
	18.	재해구호 총괄계획 수립

19.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풍수해, 지진, 폭염, 가뭄, 폭설, 한파, 풍랑)
20.	재해예방 경감사업 추진
2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추진
22.	지진피해저감사업(지진가속도계측기, 위험도평가단) 추진
2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
2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관리 및 해소방안 수립에 관한 사무
25.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재해정보지도) 작성
26.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
27.	풍수해보험 운영에 관한 사무
28.	자연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 전시
29.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30.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
31.	방재물자 관리
32.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3.	해수침투방지용 수문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4.	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35.	4대악 범죄 예방사업 총괄
36.	재난 및 국가기반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37.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총괄관리
3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사무
39.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지원 총괄
40.	재난대비 교육·훈련 총괄
41.	지역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무
42.	특정관리대상시설 총괄계획 수립
43.	초고층 및 지하연계건축물 안전관리
44.	안전점검모니터 운영 및 관리
45.	안전점검의 날 운영
46.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47.	방법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48.	각종 민원(방법, 어린이범죄예방 등)처리 및 CCTV 설치장소 선정
49.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50.	통합관제센터 및 CCTV 구축·운영 종합 계획 수립
51.	재난안전 통합관제 운영체계 도입 및 시행
52.	확장서비스(u-Service) 및 지능형서비스 개발·도입
53.	CCTV통합관리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
54.	CCTV 관련 부서·유관기관(학교, 경찰) 업무협의 및 협약 추진
55.	관제인력 채용 및 관리
56.	통합관제센터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57.	개인영상정보보호에 관한 사무
58.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59.	사회복무요원 관리
60.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무
61.	충무계획의 총괄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62.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63.	민방위훈련, 교육의 계획수립 및 시행
64.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자원관리
65.	직장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관리
66.	주민신고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무
67.	민방위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무
68.	민방위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69.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 장비에 관한 사무

	70.	기타 민방위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71.	전시 병무에 관한 사무
	72.	사회안전 예방활동 지원
	73.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감사실	1.	감사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2.	자체종합감사에 관한 사무
	3.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사법기관 통보 및 공무원 범죄처리에 관한 사무
	5.	공직기강 및 사정에 관한 업무
	6.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 관리
	7.	감사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
	8.	청렴도에 관한 사무
	9.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10.	중요정보 및 민원사항 조사 처리
	11.	첩보·진정·투서에 관한 사항
	12.	상급기관 이첩민원처리에 관한 사무
	13.	특정(기획)감사에 관한 사무
	14.	보조금 등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
	15.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에 관한 사무
	16.	민원사무 처리 실태 조사
	17.	신문 및 방송 보도사항 등 동향조사 처리
	18.	현장 및 안전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홍보 미디어실	1.	홍보 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2.	각종 시책의 홍보 등에 관한 사무
	3.	구청 활동 홍보 등에 관한 사무
	4.	각종 언론매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5.	구청 현황 소개(영상, 슬라이드 등 제작)
	6.	구청 기록에 관한 사무(사진, 영상)
	7.	구청 홍보판 관리 및 홍보용 사진제작 배포
	8.	구보 발간에 관한 사무
	9.	U-City 관련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무
	10.	방송통신융합서비스(IPTV 등) 발굴 및 확산
	11.	모바일 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무
	12.	소셜 미디어 운영 사무
	13.	스마트 워크 추진 사무
	14.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시행
	15.	정보화 사업 법제도에 관한 사무
	16.	공무원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무
	17.	정보보안에 관한 사무
	1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
	19.	정보화사업 타당성 및 예산심의에 관한 사무
	20.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중복개발) 조정
	21.	소프트웨어 관리 및 제도준수에 관한 사무
	22.	우수정보시스템 도입 및 보급에 관한 사무
	23.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무
	24.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및 관리
	25.	행정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26.	행정정보와 공간정보간 연계활용
	27.	웹서비스(홈페이지, 웹솔루션 등) 운영 관리
	28.	행정정보(지킴이시스템, 백업시스템 등) 운영 관리
	29.	행정정보망(내부, 외부망) 운영 관리

	30.	정보시스템실 및 컴퓨터 교육장 운영 관리
	31.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32.	행정정보화 전산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3.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4.	지역정보화 및 정보격차해소 추진에 관한 사무
	35.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관리
	36.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 및 문서유통에 관한 사무
	37.	공공데이터개방에 관한 사무
	38.	공공아이핀 및 행정전자서명에 관한 사무
	39.	공공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해소에 관한 사무
	40.	정부원격근무지원에 관한 사무
	41.	행정전화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42.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시설 개발 및 관리
	43.	국가정보통신망, 통신회선 등의 통합 관리
	44.	인터넷전화 시스템 및 모사전송기, IP 동보방송시설 운영 관리
	45.	정보통신보안
	46.	인터넷 방송시설 운영 관리
	47.	정보통신에 관한 주택건설 승인 협의
	48.	데이터 통신장비 운영 및 회선 관리
	49.	정보통신기술 교육에 관한 사무
	50.	무선국 운영에 관한 사무
	51.	기타 행정 통신에 관한 사무
	52.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업무
	53.	건축물 착공전 정보통신설계도서 검토 승인
총 무 과	1.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2.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
	4.	시·구민의 날 행사 종합계획 수립 업무
	5.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무
	6.	공무원의 관외출장 통제
	7.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운영관리
	8.	직장보육시설 관리 운영
	9.	자체 직장 민방위 및 예비군 운영관리
	10.	구청사 방호 및 시설의 이용·배치에 관한 사항
	11.	의식 행사 의전 접대에 관한 사항
	12.	민간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표창
	13.	공무원 건강진단 및 복리후생
	14.	공무원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관한 사항
	15.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
	16.	공무원의 인사관리
	17.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
	18.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
	19.	공무원 교육 및 피교육자 차출
	20.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21.	공무원증 발급 및 신원조사 의뢰
	22.	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23.	공무원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24.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무
	25.	공무원 고충심사 처리 및 상담해결
	26.	상시학습실 운영 등에 관한 사무
	27.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위민 행정과	28.	본청 및 소속·하부행정기관 회의의 조정·통제
	29.	직장협의회 운영 및 공무원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0.	직원복지회 운영 관리
	3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 관리
	32.	공무직(환경미화원, 동현장인력 제외) 단체(임금)교섭
	1.	주민자치센터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동 기능 전환 관련업무 총괄
	3.	동의 명칭 및 위치·구역의 변경
	4.	지방행정동향 및 각종 여론관리
	5.	확대간부회의 운영관리
	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7.	아르바이트대학생 관리
	8.	생활공감정책 지원 및 관리
	9.	행정사 등록에 관한 사무
	10.	새마을금고인가 및 지도관리
	11.	시정업무 추진에 관한 사무
	12.	일제강점하강제동원및과거사정리,6·25전쟁납북피해자 진상규명 등에 관한 사무
	13.	동 행정의 종합관리 및 실적평가
	14.	환경순찰및환경정비사무
	15.	공무직(환경미화원,동현장인력) 인사·노무·급여 관리
문화 체육과	16.	공무직(환경미화원,동현장인력) 단체(임금)교섭
	17.	공무직(환경미화원,동현장인력) 고충상담 처리 및 상담해결
	18.	통·반조직의 승인조정 및 관리
	19.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보 제작
	20.	적십자회비 모금운동 및 회비 수납지원
	21.	지역공동체 사무
	22.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
	23.	주민등록 관리 및 주민전산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
	24.	주민등록 및 외국인 인구 통계에 관한 사무
	25.	주민등록증 관리 및 주민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무
	26.	인감및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관한사무
	27.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8.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9.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에 관한 총괄 사무
	1.	지방 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사무
	3.	향토 문화재의 발굴 육성 등에 관한 사무
	4.	공연장 등록과 공연에 관한 사무
	5.	출판사, 인쇄사 신고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관한 사무
	6.	영화 및 영화상영관 등록에 관한 사무
	7.	잡지 등록 및 간행물 신고 등에 관한 사무
	8.	구사 편찬 사료수집 및 발간에 관한 사무
	9.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10.	관광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1.	여행업에 관한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2.	관광편의시설업에 관한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관광숙박업에 관한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4.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5.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6.	생활·직장체육 활동의 지원
	17.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 등에 관한 사무

	18.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19.	건전 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20.	건전 생활 활성화 시책수립 추진
	21.	공원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22.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
	23.	남동구 여성합창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4.	남동구 풍물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
민원 봉사과	1.	관인보관에 관한 사무
	2.	공인등록, 재등록, 폐기 및 인영 등록, 공고
	3.	민원(방문, 전화, 인터넷)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무
	4.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5.	민원1회 방문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민원신고센터운영
	7.	민원24관리운영
	8.	민원사무 제도 개선·시책 발굴
	9.	행정서비스현장 운영관리
	10.	친절 행정 추진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12.	여권발급에 관한 사무
	13.	무인민원발급기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무
	14.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주민등록·인감증명·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증명 발급
		나. 건축·지적민원 발급
		다. 출입국 사실 증명 발급
		라.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자에 관한 사무(체류지 변경, 제증명)
	15.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사무
	16.	수형인 명부관리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무
	17.	가족관계등록 전산 운영에 관한 사무
	18.	채무불이행자 명부관리
	19.	문서수발 및 우편물 관리
	20.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21.	기록물 정리·이관·폐기
	22.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23.	행정정보공개운영에 관한 사무
	24.	기록관 관리
	25.	시청각기록물 관리
	26.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27.	간행물 및 행정자료실 운영관리
청소과	1.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 수립
	2.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
	3.	수도권 매립지 반입 관련 사무
	4.	환경미화원 관리
	5.	국토 대청결운동 업무 추진
	6.	도심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무(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클린하우스 등)
	7.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관한 사무
	8.	해안쓰레기 정비에 관한 사무
	9.	적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
	10.	각종 청소장비 관리 운영
	11.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관한 사무
	12.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수급 관리
	13.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14.	대형 소각장 건설 추진 및 운영
	15.	재활용 활성화 추진 사업에 관한 업무
	16.	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
	17.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사무
	18.	대형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
	19.	그 밖에 폐기물 및 재활용에등 관한 사무
	20.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관련 업무
	21.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관리 등의 업무
	22.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추진
	23.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수수료 및 세척비 관리
	24.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25.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 관한 업무
	26.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에 관한 사무
	27.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신고에 관한 사무
	28.	사업장 및 건설, 지정 폐기물 신고수리 및 지도점검
	29.	의료 폐기물 신고 수리 및 지도 점검
	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재무과	1.	공사계약(하자보수관리, 주민참여감독)
	2.	용역계약(일반, 폐기물, 설계용역)
	3.	물품계약(관급자재, 수리·수선, 제조)
	4.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결산
	5.	통합자금운용관리
	6.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
	7.	세출예산지출(일반, 국비, 시재배정)
	8.	공유재산관리(취득·처분·유지관리)
	9.	구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10.	시 및 구 공유일반재산의 대부, 매각 및 유지관리
	11.	구청사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12.	물품관리(정수관리,재물조사) 및 불용결정·처분
	13.	공용차량관리
	14.	구청사 관리
	15.	공공시설의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
세무과	1.	금고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
	2.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규칙 등 제·개정 및 폐지
	3.	지방세정 운영 평가 및 표창
	4.	지방세 전산화 추진 및 관리
	5.	지방세 수입 및 결산
	6.	영수증 원본 수불 및 관리
	7.	납세보호관 사무
	8.	지방세, 농특세 등 집계 및 수납관리
	9.	세정자료의조사와통계연감작성
	10.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업무
	11.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
	12.	지방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13.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업무
	14.	기부금품 모집 심사에 관한 사항
	15.	수입금 출납사무
	16.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
	17.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계획수립 및 전망분석
	18.	지방세 가산금 조정
	19.	지방세 구제업무(소송수행 등)에 관한 사항

	20.	지방세 과세대장 정리 및 관리
	21.	지방세 납세홍보 및 교육
	22.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
	23.	지방세 독촉고지 및 체납액 징수
	24.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5.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
	26.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27.	재산조회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
	28.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9.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0.	지방세 세무조사
	31.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수립 및 총괄 추진
	32.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33.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34.	기타 개별주택과 관련한 업무
	35.	주민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6.	기타 지방세와 관련된 유사한 업무에 관한 사항
세 입 징수과	1.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지도감독
	2.	세외수입 목표액 책정 및 징수 실적·전망분석
	3.	세외수입의 수납관리 및 전산화 추진
	4.	세외수입 집계 및 영수필통지서 관리
	5.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6.	세외수입체납·결손처분등징수에관한사항(일반회계과년도분-자동차관리과관리분제외)
	7.	세외수입체납자행정규제관한사항(일반회계과년도분-자동차관리과관리분제외)
	8.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9.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요율 조정
	10.	총괄 채권관리 및 보고업무
	11.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업무
	12.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
	13.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계획수립 및 전망분석
	14.	지방세 가산금 조정
	15.	지방세 구제업무(소송수행 등)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과세대장 정리 및 관리
	17.	지방세 납세홍보 및 교육
	18.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
	19.	수입금 출납사무
	20.	지방세 체납관리·독촉고지 및 체납액 징수
	21.	기타 지방세와 관련된 유사한 업무에 관한 사항
	22.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3.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4.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5.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6.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7.	리스 및 렌트 차량 유치·관리에 관한 사무
	28.	지방세 체납정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추진
	29.	지방세 징수포상금 업무
	30.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체납 처분
	31.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규제
	32.	지방세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33.	교부청구 업무
	34.	지방세 카드납부 관리

일자리 정책과	35.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36.	징수촉탁서 처리업무
	1.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2.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운영에 관한 사무
	3.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4.	구인·구직 알선 등에 관한 사무
	5.	취업정보 전산망 운영관리
	6.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무
	7.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무
	8.	공공근로 사업 추진 및 관리
	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10.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등록, 신고에 관한 사무
	11.	유·무료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12.	남동구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무
	13.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무
기업 지원과	14.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15.	협동조합 일반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
	1.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2.	해외 단체(개별) 참가 지원 사업
	3.	해외지사화 사업
	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5.	구청장 기업탐방
	6.	기업 홈페이지 운영
	7.	경제 동향 분석
	8.	과 서무 및 회계업무
	9.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
	10.	수출지원 사업
	11.	국내외 우수인증획득 지원 사업
	12.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사업
	13.	기술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14.	기술개발 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
	15.	중소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16.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17.	기타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지원
	18.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및 융자지원 업무
	19.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 업무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업무
	21.	계량기(증명, 수리, 제작업) 등록
	22.	계량기 정기(수시) 검사, 승강기 관련 업무
	23.	전기사업법 관련 업무
	24.	공산품 관리 및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
	25.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표창
	26.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27.	남동구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원사업
	28.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29.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
생활 경제과	1.	전통시장활성화 종합추진계획 수립
	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3.	시장정비사업 인가에 관한 사무
	4.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
	5.	시장등록 및 상인회 등록관련 업무

	6.	시장 상권활성화, 경영현대화에 관한 업무
	7.	미소금융관련 업무(전통시장 소액대출 관련)
	8.	지역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
	9.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10.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11.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사무
	12.	대형마트 등 영업규제관련 업무
	13.	담배도·소매업에 관한 사무
	14.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에 관한 사무
	15.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6.	대부업에 관한 사무
	17.	소비자보호 및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사무
	18.	가스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9.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 허가(신고) 및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등록에 관한 사무
	20.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에 관한 사무
	21.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저장·가스용품 제조 허가(신고) 및 특정사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22.	도시가스 충전 허가, 공사계획 승인(신고)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23.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무
	24.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등록(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5.	LED조명기기 관련 사무
	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사무
	27.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관련 사무
	28.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무
	29.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30.	석유류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
	31.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사무
	32.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사업 관련 사무
	33.	전통시장 내 적치물경계선(고객선) 위반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제거에 관한 사무
	34.	전통시장 내 적치물경계선(고객선) 위반 불법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농축 수산물	1.	농정, 양정,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지관리에 관한 업무
	3.	농지전용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
	4.	수리시설의 유지 및 관리업무
	5.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업자재의 공급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농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무
	7.	농작물병충해 방제 등에 관한 사무
	8.	쌀농업,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
	9.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10.	전작, 원예, 특용작물 생산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1.	도시농업에 관한 업무
	12.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13.	농·축산물 유통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농업, 축산 통합 실시사업 추진
	15.	양정관련 업무
	16.	농·어업 경영체 지원업무
	17.	곤충산업 지원 업무
	18.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업무
	19.	말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무
	20.	축산진흥에 관한 업무
	21.	축산물 인·허가 업무
	22.	가축 방역 및 통계 등에 관한 업무

환경 보전과	23.	농·축산업 재해대책 추진 업무
	24.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
	25.	동물판매업 등록 및 동물등록에 관한 사무
	26.	동물병원, 동물약국 인·허가
	27.	가축사육업 허가 및 축산차량등록제 업무
	28.	어장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9.	어선등록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0.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31.	수산물 가공업에 관한 사항
	32.	연안(구획)어업에 관한 사무
	33.	소래 국가어항 개발완료 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4.	어업인 육성 및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
	35.	낙시통제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4.	물의 재이용 관리에 관한 사무
	5.	자연보호 관련 업무
	6.	수렵면허 관리 등에 관한 사무
	7.	환경측정망 관련 업무
	8.	EM사업과 관련한 사무
	9.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무
	10.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절수설비 의무화 제도에 관한 사무
	12.	무허가 배출업소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14.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5.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6.	특정토양오염대상시설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7.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무
	18.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관리
	19.	환경기술인 교육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	자동차 매연 및 배출가스에 관한 업무
	21.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
	22.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3.	먹는 물 관리에 따른 수질검사 및 관리
	24.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 구제 관련 사무
	25.	빛공해 방지 등에 관한 사무
	26.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7.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무
	2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일반 사무
	29.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검사
	30.	하수·분뇨관련영업자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1.	가축분뇨관련영업자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2.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대행계약등에 관한사무
	33.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변경) 허가(신고) 및 검사
	34.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35.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에 관한 사무
	36.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사무
	37.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등에 관한 사무
	38.	의제21 추진지원에 관한 사무

복지 정책과	1.	남동구 사회복지사무 조정·통계 등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2.	호국보훈 및 의사상자에 관한 사무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4.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관한 사무
	5.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6.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조정·시행·평가에 관한 사무
	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관한사무
	8.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9.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망 관리에 관한 사무
	10.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11.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무
	12.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13.	이웃돕기에 관한 사무
	14.	복지사각지대 관리에 관한 사무
	15.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무
	16.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17.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18.	방문형서비스 협력체계 운영에 관한 사무
	19.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무
	20.	그 밖에 주민생활국 사무의 총괄 및 지원
사회 보장과	1.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2.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관한 사무
	4.	의료급여 지원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무
	5.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무(총괄)
	6.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관한 사무
	7.	자활기금 운용·관리
	8.	노숙인 등이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노인 장애인과	1.	노인복지 증진 및 효 실천에 관한 사무
	2.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무(업무관련)
	3.	기초연금에 관한 사무
	4.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무
	5.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6.	무료급식소 및 식사배달사업에 관한 사무
	7.	장사 등에 관한 사무
	8.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9.	노인단체에 관한 사무
	10.	노인복지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
	11.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무
	13.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에 관한 사무
	14.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무
	15.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사무
	1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추진에 관한 사무
	18.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19.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무
	2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무
가정 복지과	1.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
	2.	여성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무
	3.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가족친화 인증에 관한 사무

	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5.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무
	6.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방지에 관한 사무
	7.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무
	8.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무
	9.	성폭력·가정폭력 및 여성상담에 관한 사무
	10.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에 관한 사무
	11.	국내입양아동 지원에 관한 사무
	12.	요보호아동 시설입소에 관한 사무
	13.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14.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15.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16.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17.	결식우려아동 급식에 관한 사무
	18.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사무
	19.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0.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무
	21.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
	22.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3.	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24.	청소년 복지시설 신고
	25.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사무
	26.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사무
	27.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28.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2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30.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사무
	3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무
	32.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무
	33.	숙박형등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34.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 등록
	35.	드림스타트 종합계획
	36.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슈퍼비전 설치·운영
	37.	드림스타트 조직화 및 협력·후원기관 발굴 및 관리
	38.	분야별 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운영
	39.	대상아동 인테이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40.	아동통합사례관리사·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운영·관리
	41.	돌봄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보육 정책과	1.	보육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	어린이집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무
	3.	무상보육 지원에 관한 사무
	4.	영유아무상보육 자격책정에 관한 사무
	5.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무
	6.	어린이집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7.	보육교직원 관리에 관한 사무
	8.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9.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무
	10.	어린이집 인가, 휴·폐업
	11.	특수어린이집 지정 및 관리
	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
	13.	정부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개보수

	14.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5.	어린이집 지도점검
	16.	어린이집 행정처분
	17.	보육멘토 업무
	18.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평생 교육과	1.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3.	지역교육사업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 업무 지원
	4.	지역우수자 대학 전형 지원에 관한 사항
	5.	취학사무에 관한 사항
	6.	각급 학교 표창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경비보조금(초·중·고등학교)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8.	교육경비보조금(사립유치원)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9.	혁신학교 지원 관리에 관한 사무
	10.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무
	11.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무
	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13.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14.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관련 사무
	15.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16.	평생교육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무
	17.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18.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0.	평생학습 시설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기타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관련된 사항
	22.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건 설 과	1.	건설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 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
	3.	도로 안내표시판 설치 및 수리 등에 관한 사무
	4.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구거)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5.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6.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7.	지하도검 상가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도로굴착 허가 등에 관한 사무
	9.	하수도 특별회계(계약 및 지출)에 관한 업무
	10.	전문 건설업 등록 및 면허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건설기계 관련 업무 총괄 및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무(이외의 건설기계 관련 업무)
	12.	공공하수도 신고 및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3.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홍보에 관한 사무
	14.	지하수 개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방 하천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방재 관련 사무 제외)
	16.	소하천의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방재 관련 사무 제외)
	17.	도로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무
	18.	토목, 건설 공사의 조사, 측량, 시행 등에 관한 사무
	19.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	교량 등 구조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1.	수로원 배치관리 및 도로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2.	사도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3.	기타도로시설물에관한관리등에관한사무(기존건축물증축부분이도로를침범한경우제외)
	24.	사업 관련 보상 등에 관한 사무

건축과	25.	골재채취 허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6.	도로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한함 단 노점상노점판매대는 제외)
	27.	지하수특별회계에 관한 사무
	28.	자전거이용시설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9.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0.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1.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
	32.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무
	33.	자전거 보관대, 대여소 신설 및 유지관리
	34.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
	35.	공동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	건축 행정의 종합 조정
	2.	건축 행정 건실화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신발생 위법건축물(무허가) 정비 등에 관한 사무(GB, 도로 및 인도 제외)
	5.	향측 적출 위법건축물 조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무(GB, 도로 및 인도 제외)
	6.	세외 수입(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사무
	7.	건축위원회설치및운영
	8.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 제한에 관한 사무
	9.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10.	건축허가·신고관련업무에관한사항
	11.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12.	공작물 축조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건축 시공의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무
	14.	통계(건축, 주택) 업무 등에 관한 사무
	15.	건축물대장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6.	건축물대장 표시 등에 관한 사무
	17.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에 관한 사항
	18.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업무에 관한 사무
	19.	건축물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업무
	20.	건축물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사무
	22.	건축물 분양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3.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24.	공동주택관리감사에관한업무
	25.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6.	공동주택 현장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무
	27.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28.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29.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30.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31.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32.	임대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33.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운영
	34.	미분양주택 관리 사무
	35.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에 관한 사무
	36.	주택관리업 관리에 관한 사무
	37.	임대주택 관리업 관리에 관한 사무
	38.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사무
	39.	주거급여사업에관한사무
	40.	주택바우처에 관한 사무

	41.	주택 개량 지원 사업
	42.	주택 매입(전세) 임대
	4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44.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
	45.	집수리 개선 사업
	46.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47.	공동주택관리주체외부회계감사
	48.	공동주택 감리자 모집 및 승인 업무
	49.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 업무
	50.	빈집정비등에 관한 업무
	51.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업무
도시 관리과	1.	사업 관련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무
	2.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3.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6.	기타 도시계획 관련 업무
	7.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8.	일반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9.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사무
	11.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무
	12.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3.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관련 잔여사무(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제증명 발급 각종 공사시행 등)
	14.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6.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17.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보전에 관한 사무
	18.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19.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0.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
	21.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도시 경관과	1.	가로정비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로상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제거에 관한 사무 (전통시장 내 적치물경계선(고객선)과 분리된 불법 노점 및 적치물의 경우 포함)
	3.	노점상 실명제 실시지역 실명제노점상 선정 및 점용허가
	4.	불법 노점 및 적치물(시설, 설치물 제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전통시장 내 적치물경계선(고객선)과 분리된 불법 노점 및 적치물의 경우 포함)
	5.	옥외광고물 종합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6.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업 인허가사무
	7.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8.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무
	9.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및 관리
	10.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1.	간판개선에 관한 사업
	12.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관한 사무
	13.	도시경관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14.	도시경관위원회설치및운영
	15.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6.	경관 협정 및 운영회에 관한 사무
	17.	경관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18.	공공디자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공원 녹지과	1.	공원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2.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체육시설 제외)
	3.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5.	법령 등의 위반자 처분
	6.	과태료 부과 징수
	7.	기타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사무
	8.	도시공원대장·도시자연공원구역 대장 작성
	9.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10.	공원·녹지 조경관리 등 유지관리 사무
	11.	공원·녹지조성 종합계획 수립
	12.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설치
	13.	공원·녹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무
	14.	도시공원 시범사업
	15.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및 손실보상
	16.	시설녹지의 설치
	17.	공원녹지 리모델링에 관한 사무
	18.	장기미집행시설(공원·녹지) 집행계획 수립 추진
	19.	산림 기본 계획 수립
	20.	산림 문화·휴양 기본계획 수립
	21.	산림보호, 조림, 숲 가꾸기 사업 등에 관한 사무
	22.	입목 벌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3.	임산물 굴취, 채취 허가
	24.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무
	25.	공·사유림 내 채석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6.	국토 공원화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27.	도시녹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8.	녹지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9.	도심 속 쉼터 조성 및 관리
	30.	둘레길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1.	숲 치유사업에 관한 사무
	32.	세외수입(수목피해 변상금)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
교통 행정과	1.	교통 기획의 종합조정
	2.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
	3.	교통안전관련 시설사업 추진
	4.	지역 교통안전계획에 관한 사무
	5.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 대상물 전수조사 및 부과 징수
	6.	지하철 및 철도 관련 업무 행정지원
	7.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등에 관한 사무
	8.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업무 등에 관한 사무
	9.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등
	10.	주·정차금지구역 관리에 관한 사무
	11.	교통 분야 공익요원 지도 관리
	12.	주차장 설치 운영
	13.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
	14.	노상, 노외, 기계식,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무
	15.	민영주차장 설치 등 통보처리에 관한 사무
자동차 관리과	1.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업무
	2.	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사무
	3.	시내버스(지선버스) 및 택시 운송에 관한 업무
	4.	자동차 운송 주선업에 관한 사무

	5.	자동차 창고업에 관한 사무
	6.	자가용 자동차 사용에 관한 사무
	7.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행정처분
	8.	화물자동차(용달, 개별화물) 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9.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무
	10.	자동차에 대한 개선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1.	이륜자동차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자동차의사용정지명령(자동차검사관련업무제외)등에 관한 사무
	13.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
	14.	자동차관리과 과태료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15.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수사 및 통고처분
	16.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17.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행위 단속 등에 관한 사무
	18.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단속에 관한 사무
	19.	무단방치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무
	20.	자동차 무단방치사건 수사 및 통고처분
	2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열람신청의 처리
	22.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3.	자동차 압류등록의 처리
	24.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에 관한 사무
	25.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멸실의 경우의 조치
	26.	자동차의 신규등록·등록증의 교부
	27.	자동차 신규등록의 거부
	28.	자동차등록번호판 탈·부착 및 봉인
	29.	자동차 변경·이전·말소등록
	30.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31.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32.	자동차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
	33.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무
		가. 건설기계등록 및 변경등록
		나. 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다.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라.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마.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
		바.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사. 과태료 처분
토지 정보과	1.	지적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적 측량 성과검사 등에 관한 사무
	3.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무
	4.	측량결과도 및 결의서 보존관리
	5.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감독
	6.	그 밖에 지적 및 측량표지에 관한 사무
	7.	토지 이동지 일제 조사
	8.	지적 공부 관리에 관한 사무
	9.	디지털 지적 구축 사업에 관한 사무
	10.	지적재조사 사업
		가.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한 업무
		나. 경계결정 및 조정금 의결 등에 관한 업무
		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라.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마.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관한 사무

11.	토지(임야) 신규 및 분할 등에 관한 사무
12.	토지분할허가(개발제한구역 제외)에 관한 사무
13.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운영에 관한 사무
14.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관리
1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16.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17.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관한 사무
18.	지적전산 및 전산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19.	조상땅 찾기에 관한 사무
20.	사단·재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관리(법인 제외)
2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22.	토지이용계획도 보존관리 사무
23.	지적 행정 일반에 관한 사무
2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입안·고시 사항 정리
25.	도시계획, 연속지적도 오류정비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26.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27.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에관한사무
28.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등에 관한 사무
29.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30.	토지거래계약허가 등에 관한 사무
31.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
32.	외국인 부동산관리 취득 업무
33.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및 이전 등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사무
34.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35.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3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무
37.	개발부담금 대상 관리 및 부담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38.	부동산실명법 운영에 관한 사무
39.	도로명 부여 및 변경 사무
40.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사무
41.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사무
42.	주소 일괄변경 사무
43.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관리업무
44.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
45.	국가기초구역에관한사무
46.	국가지점번호제도추진에관한사무
47.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
48.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사업
49.	도로명주소 대장 발급 및 열람
50.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부서간 갈등·분쟁업무(전통시장 내 불법행위 처리) 조정에 따른 분장사무를 정비함으로써 대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 본청 사무분장표 조정 및 정비(안 별표1)
 - 생활경제과(신설)
 - 전통시장 내 적치물경계선(고객선) 위반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제거에 관한 사무
 - 전통시장 내 적치물경계선(고객선) 위반 불법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도시경관과(조정) :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 범위 확대
 - 전통시장 내 적치물경계선(고객선)과 분리된 불법 노점 및 적치물의 경우 포함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8년 3월 30일

남동구 규칙 제97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제2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비고 (행정복지)
총 계	1,006	551	20	72	22	341	(4)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1,002	547	20	72	22	341	(4)
2 급 소 계	1	1					
지방이사관	1	1					
4 급 소 계	6	4	1	1			
지방서기관	4	3	1				
지방기술서기관	2	1		1			
5 급 소 계	62	32	2	7	2	19	
의 무	3			3			
행 정·시 설	17	10			1	6	
행 정·사회복지	11	9			1	1	
행 정·녹 지	2	1				1	
행 정·보 건	4			1		3	
행 정·환 경	2	2					
행 정·공 업	2	2					
행 정·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1	2				
행정·사회복지·녹지	1					1	
행정·사회복지·의무	2					2	
행정·시설·공업	1	1					
행정·보건·시설	3	1				2	

행정·간호·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2	1				1	
행정·녹지·환경	1	1					
행정·보건·간호	3			2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6 급소계	269	149	8	17	5	90	
행정·사회복지	68	28			2	38	
행정·세무	29	20	2			7	
행정·전산	5	5					
행정·사서	4	3				1	
행정·공업	12	8				4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8	1				7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6			4		2	
행정·환경	10	5				5	
행정·시설	36	20				16	
행정·방송통신	4	4					
전산·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시설	1	1					
속기·사무운영	1		1				
공업·시설	6	6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7			7			
시설·환경	1	1					
시설·해양수산	1	1					
의료기술·간호	1			1			
운전·기계운영	4	3		1			
기계운영·사무운영	3	3					
행정·시설·녹지	11	10			1		
행정·공업·시설	6	5			1		
행정·전산·방송통신	7	2	2			3	
행정·사회복지·시설	6	3	3				
행정·공업·환경	5	5					
행정·세무·시설	2	2					
행정·전산·시설	3	3					
행정·세무·환경	1				1		
행정·시설·환경	3	3					
행정·농업·수의	2	2					
행정·보건·간호	4			1		3	
시설·환경·녹지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7 급소계	380	208	8	27	7	130	(4)
행 정	126	66	3		3	54	(4)
세 무	16	16					
전 산	7	7					

사회복지	54	7				47	
숙기	2		2				
공 업	5	5					
농 업	2	2					
녹 지	6	6					
해양수산	1	1					
보 건	11			11			
의료기술	6			6			
간 호	6			6			
환 경	9	9					
시 설	36	36					
방송통신	2	2					
간호조무	1			1			
운전	13	6	1		1	5	
전화상담운영	1	1					
기계운영	3	2	1				
사무운영	8	6	1			1	
행정·사회복지	5	1			1	3	
행정·세무	28	20				8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3					3	
행정·보건	2					2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4	3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4	2			2		
농업·수의	1	1					
녹지·시설	1	1					
보건·간호	3			3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3					3	
행정·전산·시설	1					1	
8 급소계	250	128	1	19	7	95	
행 정	94	58	1		3	32	
세 무	4	3			1		
전 산	3	3					
사회복지	48	9				39	
사 서	2	2					
공 업	5	5					
농 업	2	2					
녹 지	6	5			1		
보 건	12	1		11			
의료기술	2			2			
간 호	2			2			
환 경	4	3			1		
시 설	12	12					
방송통신	1	1					

운전	5			1		4	
사무운영	7	3				4	
전기운영	1	1					
행정·사회복지	8	3				5	
행정·세무	9	6				3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3	2				1	
행정·방송통신	3	2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4	3			1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2			2			
9 급소계	33	24	0	1	1	7	0
행 정	2	0				2	
전 산	0	0					
사회복지	6	3			1	2	
사서	1	1					
농업	0	0					
녹 지	1	1					
의료기술	1			1			

	시 설	6	6					
		0	0					
		0	0					
		3	1				2	
		1	1					
		1	1					
		2	2					
		2	2					
		1	1					
		3	3					
		2	1				1	
		1	1					
		1	1	0	0	0	0	0
		1	1					
	별정직계		3	3	0	0	0	0
	5 급상당소계	1	1	0	0	0	0	0
		비서실장	1	1				
		6 급상당소계	1	1	0	0	0	0
		비 서	1	1				
		7 급상당소계	1	1	0	0	0	0
		비서	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및 역량있는 인력의 적재 적소 배치를 위한 일부 직렬의 복수직 부여로 보다 탄력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총정원 및 해당 기관별 · 직급별 정원 변동없음
- [별표 1]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일부 개정
 - 단수직렬의 복수 조정(총 34명)

직급	현행		개정(안)		비고
5급	4복수	1명	4복수	1명	(1명) 직렬 변경
7급	단수	8명	2복수	8명	(12명)
	2복수	4명	3복수	4명	
8급	단수	12명	2복수	10명	(13명)
			3복수	2명	
	2복수	1명	3복수	1명	
9급	단수	8명	2복수	8명	(8명)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8년 3월 30일

남동구 훈령 제34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본청 각 실·단·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551	
기 획 예 산 실	일반직	계	17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1
		6급	6	행정·사회복지2, 행정·전산2, 행정·시설2
		7급	6	행정5, 행정·세무1
		8급	4	행정3, 전산1
		9급		
공영개발 사 업 단	일반직	계	9	
		5급	1	행정·시설1
		6급	3	행정·공업1, 시설·해양수산1, 행정·시설1
		7급	3	행정·시설3
		8급	0	
		9급	2	시설1, 행정·녹지1
안 전 총 괄 실	일반직	계	19	
		5급	1	행정·시설·공업1
		6급	4	행정·공업2, 행정·시설1, 행정·방송통신1
		7급	7	행정1,공업1, 시설1, 방송통신1, 사무운영1 행정·방송통신1, 공업·시설1
		8급	3	행정·방송통신1, 행정·시설1, 전기운영1
		9급	4	행정·방송통신1, 행정·방재안전3
감 사 실	일반직	계	9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세무2, 행정·사회복지·시설3
		7급	3	행정1, 시설1, 행정·사회복지·시설1
홍 보 미디어실	일반직	계	17	
		5급	1	행정·방송통신1
		6급	4	행정·방송통신2, 행정·시설1, 전산·방송통신1,
		7급	7	행정1, 전산4, 방송통신1, 전화상담운영1
		8급	4	전산2, 방송통신1, 행정·방송통신1
		9급	1	행정·전산1
총 무 과	계 정무직 일반직		22	
		-	1	구청장1
		소계	18	
		2급	1	지방이사관1
		4급	1	지방서기관1
		5급	1	행정·시설·보건1
		6급	3	행정·공업1, 행정·방송통신1, 행정·시설1
		7급	6	행정6
		8급	6	행정6
	별정직	소계	3	
		5급	1	비서실장1

		6급	1	비서요원(수행)1
		7급	1	비서요원(기사)1
위 민 행정과	일반직	계	12	
		5급	1	행정·녹지·환경1
		6급	3	행정·전산1, 행정·시설·녹지2
		7급	4	행정3, 전산1
		8급	4	행정4
문 화 체육과	일반직	계	13	
		5급	1	행정·녹지1
		6급	4	행정·시설1, 행정·시설·녹지3
		7급	7	행정5, 시설1, 녹지·시설1
		8급	1	행정1
민 원 봉사과	일반직	계	19	
		5급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행정·전산1, 행정·시설·공업1
		7급	4	행정3, 사무운영1
		8급	9	행정9
	연구직		1	기록연구사1
청 소 과	일반직	계	14	
		5급	1	행정·환경1
		6급	4	행정·시설·환경3, 행정·환경1
		7급	4	행정1, 환경2, 사무운영1
		8급	5	행정3, 환경2
		9급		
재 무 과	일반직	계	26	
		4급	1	지방서기관1
		5급	1	행정·시설1
		6급	7	운전·기계운영3, 행정·세무·시설2, 행정·공업·시설2
		7급	11	행정3, 공업2, 시설1, 운전4, 행정·세무1
		8급	6	행정4, 공업1, 시설1
		9급		
세 무과	일반직	계	28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7	행정·세무7
		7급	17	세무8, 전산1, 행정·세무8
		8급	3	세무1, 행정·세무2
		9급	0	
세 입 징 수 과	일반직	계	28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7	행정·세무7
		7급	15	세무7, 행정·세무8
		8급	5	세무2, 행정·세무3
		9급	0	
일 자 리 정책과	일반직	계	13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사회복지2, 행정·전산1, 행정·공업1
		7급	6	행정6
		8급	2	행정2
기 업 지 원 과	일반직	계	12	
		5급	1	행정·공업1
		6급	4	행정·세무1, 공업·시설1, 행정·공업·시설2
		7급	6	행정3, 공업2, 공업·시설1
		8급	0	
		9급	1	행정·공업1
생 활 경 제 과	일반직	계	13	
		5급	1	행정·공업·환경1
		6급	4	행정·공업2, 행정·환경1, 시설·공업1
		7급	3	행정3
		8급	4	행정·공업1, 공업2, 공업·시설1
		9급	1	행정·공업1
농 축 수 산 과	일반직	계	14	
		5급	1	행정·농업·해양수산1
		6급	3	행정·해양수산1, 행정·농업·수의2
		7급	5	행정1, 농업2, 해양수산1, 농업·수의1
		8급	3	농업2, 행정·해양수산1
		9급	2	행정·농업2
환 경 보 전 과	일반직	계	20	
		5급	1	행정·환경1
		6급	8	행정·환경3, 시설·환경1, 행정·환경·공업3, 사무운영·기계운영1
		7급	8	환경7, 공업·환경1
		8급	3	환경1, 공업·환경1, 행정·세무1
복 지 정 책 과	일반직	계	15	
		4급	1	지방서기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사회복지4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5	행정2, 행정·사회복지3
사 회 보 장 과	일반직	계	14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사회복지3
		7급	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급	6	행정1, 사회복지5
		9급	1	사회복지1
노 인 장애인과	일반직	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6	행정·사회복지6
		7급	6	행정3, 사회복지3
		8급	5	행정3, 사회복지2
		9급	1	사회복지1
가 정 복 지 과	일반직	계	13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사회복지4
		7급	3	행정2, 행정·간호1
		8급	4	행정2, 사회복지1, 보건1
		9급	1	사회복지1
보육 정책과	일반직	계	14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6	행정·사회복지6
		7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9급	1	행정·사회복지1
평생 교육과	일반직	계	14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사서3, 행정·전산·방송통신2
		7급	4	행정2, 행정·사서2
		8급	2	사서2
		9급	2	사서1, 행정·사서1(임기제-사서)
건설과	일반직	계	27	
		4급	1	지방기술서기관1
		5급	1	행정·시설1
		6급	6	행정·시설2, 공업·시설3, 사무운영·기계운영1
		7급	12	행정1, 시설7, 운전1, 기계운영1, 행정·공업2
		8급	6	행정·공업1, 공업2, 시설2, 공업·시설1
		9급	1	행정·시설1
건축과	일반직	계	22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시설4, 사회복지·시설1
		7급	8	행정1, 시설7
		8급	6	사회복지1, 시설4, 사무운영1
		9급	2	시설2
도시 관리과	일반직	계	20	
		5급	1	행정·시설1
		6급	6	행정·시설3, 공업·시설1, 시설·환경·녹지2
		7급	7	행정1, 시설6
		8급	5	행정1, 시설3, 사무운영1
도시 경관과	일반직	계	15	
		5급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시설1, 행정·시설·녹지3
		7급	5	행정2, 사무운영2, 행정·세무1
		8급	4	행정2, 행정·시설1, 사무운영1
공원 녹지과	일반직	계	18	
		5급	1	행정·녹지·시설1
		6급	4	행정·녹지1, 녹지·시설1, 행정·시설·녹지2
		7급	6	녹지6
		8급	6	행정1, 녹지5

		9급	1	녹지1
교 통 행 정 과	일 반 직	계	14	
		5급	1	행정·시설1
		6급	2	행정·시설2
		7급	7	행정1, 시설3, 전산1, 운전1, 행정·세무1
		8급	4	행정4
자 동 차 관 리 과	일 반 직	계	23	
		5급	1	행정·공업1
		6급	6	행정·세무2, 행정·공업1, 행정·공업·환경2, 사무운영·기계운영1
		7급	7	행정4, 세무1, 기계운영1, 사무운영1
		8급	9	행정8, 공업·시설1
토 지 정 보 과	일 반 직	계	18	
		5급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시설1, 행정·전산·시설3
		7급	10	행정1, 시설9
		8급	2	시설2
		9급	1	시설1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72	
보 건 행정과	일반직	계	26	
		4급	1	지방기술서기관1
		5급	2	의무1(개방형1), 행정·보건·간호1
		6급	6	행정·보건1, 보건·간호2, 보건·의료기술1, 운전·기계운영1, 행정·보건·간호1
		7급	13	보건2, 의료기술5, 간호3, 간호조무1, 보건·간호2
		8급	3	행정·보건·간호1, 의료기술1, 운전1
		9급	1	의료기술1
건 강 증진과	일반직	계	19	
		5급	3	의무2(개방형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
		6급	5	보건·간호3, 의료기술·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7급	7	보건3, 의료기술1, 간호3
		8급	4	보건2, 간호1, 행정·보건·간호1
		9급	0	
식 품 위생과	일반직	계	19	
		5급	1	행정·보건1
		6급	4	행정·보건3, 보건·간호1
		7급	5	보건5
		8급	9	보건9
		9급	0	
간석건강 관리센터	일반직	계	8	
		5급	1	행정·보건·간호1
		6급	2	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7급	2	보건1, 보건·간호1
		8급	3	의료기술1, 간호1, 보건·간호1
		9급	0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341	
구월1동	일반직	계	17	
		5급	1	행정·보건1
		6급	5	행정·사회복지2, 행정·시설1, 행정·환경1, 행정·세무1
		7급	8	행정3(행정복지1),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행정·세무·시설1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구월2동	일반직	계	18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사회복지2, 행정·세무1, 행정·공업1, 행정·시설1
		7급	7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세무1, 행정·보건1
		8급	5	행정1, 사회복지1, 사무운영1, 행정·사회복지1, 행정·방송통신1
구월3동	일반직	계	18	
		5급	1	행정·복지1
		6급	5	행정·사회복지2, 행정·복지1, 행정·세무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
		7급	6	행정4,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8급	4	행정1, 사회복지2, 행정·환경1
		9급	2	행정·사회복지1, 행정·시설1
구월4동	일반직	계	19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사회복지2, 행정·세무1, 행정·시설1, 행정·보건·간호1
		7급	8	행정3(행정복지1), 사회복지3, 사무운영1, 행정·세무·시설1
		8급	5	행정1, 사회복지3, 운전1
간석1동	일반직	계	17	
		5급	1	행정·간호·시설1
		6급	4	행정·사회복지2, 행정·복지1, 행정·보건1
		7급	7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세무1, 행정·환경1
		8급	5	행정2, 사회복지1, 운전1, 사무운영1
간석2동	일반직	계	16	
		5급	1	행정·보건1
		6급	5	행정·사회복지2, 행정·시설1, 행정·세무1, 행정·보건·간호1

		7급	5	행정2,사회1,행정·사회복지1,행정·전산·시설1
		8급	5	행정3,사회복지2
간석3동	일반직	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의무1
		6급	5	행정·사회복지2, 행정·사서1, 행정·환경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
		7급	6	사회복지3, 행정·세무1, 행정·환경1, 행정·보건1
		8급	7	행정2, 사회복지3, 운전1, 행정·전산1
간석4동	일반직	계	19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사회복지2, 행정·복지1, 행정·보건·간호1, 행정·시설1
		7급	7	행정3, 사회복지2, 행정·세무1, 행정·복지1
		8급	6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운전1
		9급		
만수1동	일반직	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의무1
		6급	5	행정·사회복지2, 행정·시설1, 행정·공업1, 행정·전산·방송통신1
		7급	8	행정3(행정복지1), 사회복지3, 운전1, 행정·세무·시설1
		8급	4	행정2, 사회복지2
		9급	1	사회복지1
만수2동	일반직	계	18	
		5급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사회복지2, 행정·공업1, 행정·시설1
		7급	8	행정3, 사회복지3, 행정·세무1, 운전1
		8급	5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만수3동	일반직	계	15	
		5급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사회복지2, 행정·시설1, 행정·환경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5	행정1, 사회복지2, 사무운영1, 행정·환경1
만수4동	일반직	계	16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사회복지2, 행정·복지1, 행정·시설1, 행정·전산·방송통신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세무1
만수5동	일반직	계	16	
		5급	1	행정·보건·간호1
		6급	5	행정·사회복지2, 행정·세무1, 행정·시설1, 행정·전산·방송통신1
		7급	4	행정2, 사회복지2
		8급	6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세무1
만수6동	일반직	계	17	
		5급	1	행정·보건·시설1
		6급	4	행정·사회복지2, 행정·공업1, 행정·시설1
		7급	7	행정4, 사회복지3
		8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세무·시설1
장수 서창동	일반직	계	23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1
		6급	5	행정·사회복지2, 행정·시설1, 행정·농업1, 행정·녹지1
		7급	9	행정5, 사회복지3, 행정·세무1
		8급	6	행정1, 사회복지3, 사무운영1, 행정·농업1
		9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남촌 도림동	일반직	계	19	
		5급	1	행정·보건·시설1
		6급	5	행정·사회복지2, 행정·시설1, 행정·농업1, 행정·녹지1
		7급	7	행정3, 사회복지3, 행정·시설1
		8급	6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행정·세무1, 행정·농업1
논현1동	일반직	계	18	
		5급	1	행정·보건1
		6급	4	행정·사회복지2, 행정·시설1, 행정·보건1
		7급	7	행정3, 사회복지2, 운전1, 행정·세무1
		8급	4	행정2, 사회복지2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논현2동	일반직	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사회복지2, 행정·시설1, 행정·녹지1, 행정·환경1
		7급	8	행정3(행정복지1), 사회복지3, 행정·세무1, 운전1
		8급	5	행정3, 사회복지2

논 현 고잔동	일반직	계	18	
		5급	1	행정·시설·녹지1
		6급	5	행정·사회복지2, 행정·시설1, 행정·환경1, 행정·세무1
		7급	8	행정3, 사회복지2, 운전1, 행정·녹지2
		8급	4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시설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및 역량있는 인력의 적재 적소 배치를 위한 일부 직렬의 복수직 부여로 보다 탄력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서(기관)별 정원 총수는 변동없음
- [별표 1, 3, 5] 본청, 직속기관, 동에 두는 공무원의 직렬 조정(안)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622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3-307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 ·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7-91호(2017.8.9.)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3-307호선】 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후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4), 건설과(032-453-272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년3월2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762번길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307호선)
 - 명칭: 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중로3-307호선)
3. 사업규모
 - 중로3-307호선: B=12.0m, L=750.0m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건설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고시일 ~ 2019.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7.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용지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 계	잔여 면적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도로 내	도로 외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도림동	386-11	도	340.0	161.3		161.3	178.7	인천광역시	공				
2	"	386-7	도	1,452.0	1,376.6	-	1,376.6	75.4	인천광역시	공				
3	"	386-10	도	44.0	44.0	-	44.0	-	인천광역시	공				
4	"	401-6	도	261.0	242.8		242.8	18.2	기획재정부	국				
5	"	399-3	도	530.0		37.5	37.5	492.5	인천광역시	공				
6	"	399-6	도	565.0	530.7		530.7	34.3	인천광역시	공				
7	"	617	도	18,756.0		14.0	14.0	18,742.0	국토교통부	국				
8	"	617-56	도	126.0	112.9		112.9	13.1	건설부	국				
9	"	617-58	도	73.0	73.0		73.0	-	건설부	국				
10	"	617-59	도	832.0	472.8		472.8	359.2	건설부	국				
11	"	404-1	도	499.0		177.0	177.0	322.0	인천광역시	공				
12	"	404-3	도	1,582.0	1,565.3		1,565.3	16.7	인천광역시	공				
13	"	412-36	도	106.0		11.0	11.0	95.0	인천광역시	공				
14	"	412-35	도	2,177.0	2,177.0		2,177.0	-	인천광역시	공				
15	"	412-34	공	8.0	8.0		8.0	-	남동구	공				
16	"	412	공	25,130.0		94.8	94.8	25,035.2	남동구	공				
17	도림동	346-9	도	750.0	251.9		251.9	498.1	건설부	국				
18	"	산 62-9	임	77.0	77.0	-	77.0	-	두*열	남구 남주길**번길*-*,***호 (주안동,** 빌라)				
19	"	647	도	286.0	286.0	-	286.0	-	기획재정부	국				
20	당초	"	412-19	임	128.3	-	128.3	10.7	노*환	논현동 ***				
20	변경	"	412-38	임	138.0	138.0	138.0	-	노*환	논현동 ***				변경
21	"	412-37	과	114.0	114.0	-	114.0	-	이*숙	구월동 ****-*	****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 동 ***	구분지상권	
									김*중	남구 관교동 **-* 풍림아파트 ***-***				
									강*영	논현동 ***-* *****아파트 ***-***				
22	도림동	386-9	도	49.0	45.0	-	45.0	4.0	인천광역시	공				
23	"	403-3	전	1.0	1.0	-	1.0	-	강*식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동 ****호	*****조합	인천시 남구 주안동 ***-*	근저당권	
											"	"	구분지상권	
											"	"	구분지상권	
											"	인천시 남동구 경인 로 *** (주안동)	근저당권	
소 계			당초	53,897.0	7,667.6	334.3	8,001.9	45,895.1						
			변경	53,897.0	7,677.3	334.3	8,011.6	45,885.4						

□ 지장물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	수량 (개소)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도림동	401-3	비닐하우스	6.28 × 5.50	24.7		신*군	남동구 도림동 ***-*	
2	도림동	399-3	비닐하우스	10.3 × 2.80	21.8		김*순	남동구 도림동 ***-*	
3	도림동	399-3	비닐하우스	9.00 × 6.60	41.4		김*순	남동구 도림동 ***-*	
4	도림동	412-5	임간판	2.00 × 5.00		1.0	두*열	남동구 도림동 ***-*	
			관상수	H=1.2m		35.0	두*열	남동구 도림동 ***-*	
5	도림동	산62-9	황금편백	H = 0.7~1.5		23	두*열	남동구 도림동 ***-*	신규
			주목	H = 0.7~1.5		8	두*열	남동구 도림동 ***-*	신규
			사철나무	H = 0.5~1.5		3	두*열	남동구 도림동 ***-*	신규
			회양목	H = 0.5 내외		13	두*열	남동구 도림동 ***-*	신규
			잣나무	H = 0.8,1.5		2	두*열	남동구 도림동 ***-*	신규
			뽕나무	H = 1.0		1	두*열	남동구 도림동 ***-*	신규
			단풍나무	H = 0.8~1.5		3	두*열	남동구 도림동 ***-*	신규
			철쭉	H = 0.4 내외		6	두*열	남동구 도림동 ***-*	신규
			장미	H = 0.4		1	두*열	남동구 도림동 ***-*	신규
			백일홍	H = 2.5		1	두*열	남동구 도림동 ***-*	신규
			간판	지지대포함		1	두*열	남동구 도림동 ***-*	신규
			관정			1	두*열	남동구 도림동 ***-*	신규
			관정함	판넬,1*1		1	두*열	남동구 도림동 ***-*	신규
			장승	목조		1	두*열	남동구 도림동 ***-*	신규
			조형물	항아리,수석등		1	두*열	남동구 도림동 ***-*	신규
			바닥타일	8EA		1	두*열	남동구 도림동 ***-*	신규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667호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공사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공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칭)논현도서관 건립공사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을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24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3월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명: (가칭)논현도서관 건립공사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공개
2. 심사위원 명단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위 원 명 단		총 7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전문분야	비고
1	청주대학교	교수	김미연	건축	건축계획 및 설계
2	영남대학교	교수	조영흠	건축설비	건축계획 및 설계
3	부천대학교	교수	박영호	건축및인테리어설계	에너지계획
4	영남대학교	교수	김소희	건축학	에너지계획
5	국민대학교	교수	이민	공간디자인	실내건축
6	백석대학교	교수	노정은	인테리어디자인	실내건축
7	시원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정영식	건축	건축사
예비위원 명단 (총 7명)					
1	한남대학교	교수	곽노열	건축환경 및 설비	건축계획 및 설계
2	충북대학교	교수	이병연	건축계획	건축계획 및 설계
3	세명대학교	교수	이완건	건축계획	에너지계획
4	디지털서울문화대학교	교수	박연성	건축	에너지계획
5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조성오	실내설계	실내건축
6	부천대학교	교수	소준영	건축계획및실내디자인	실내건축
7	C.M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응택	건축	건축사

3. 심사위원 기피신청 기한: 2018. 04. 20.(금)까지 (근거자료 제시)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8-675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석촌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석촌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8년3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석촌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 내용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시설면적		면적(㎡)	시설면적		
					면적(㎡)	시설율 (%)		면적(㎡)	시설율 (%)	
변경	석촌 공원	근린 공원	간석동 산15-1 일원	53,577	7,728	14.42	53,691	7,740	14.41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석촌 공원	•시설율 및 녹지율 변경 - 기 정 : 14.42% - 변 경 : 14.41%	•기존 배드민턴장을 산림으로 복원시키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생활체육 장터를 위하여 통합 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총괄표

■ 석촌공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증·감)
		부지(㎡)	구성비(%)	부지(㎡)	구성비(%)	
총 계		53,577	100	53,691	100	공원면적:증)114.0㎡
	기반시설	3,391.0	6.33	2,945.0	5.49	
	도 로	1,236.0	2.31	1,218.0	2.27	시설면적:감)18.0㎡
	광 장	2,155.0	4.02	1,727.0	3.22	시설면적:감)428.0㎡
조경시설		-		-		
휴양시설		990.0	1.85	920.0	1.71	시설면적:감)70.0㎡ 공 작 물:감)7기
운동시설		1,345.0	2.51	1,495.0	2.78	시설면적:증)150.0㎡ 건축물 : 증)947.6㎡
교양시설		-		-		
편익시설		1,652.0	3.08	2,090.0	3.89	시설면적:증)438.0㎡ 건축물 : 감)32.0㎡
유흥시설		290.0	0.54	290.0	0.54	
관리시설		60.0	0.11	-		시설면적:감)60.0㎡ 건축물 : 감)60.0㎡
기타시설		-		-		
녹지 및 기타		45,849.0	85.58	45,951	85.59	녹지면적:증)102.0㎡

2.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원녹지과(☎453-6140)

4.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18-4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3월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

1. 제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일자: 내역 참조
3. 처분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고기간: 2018. 3. 28. ~ 2018. 4. 11.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일
위탁급식 영업	2004- 0200113	해피푸드	이**	능허대로 690 (고잔동, 148블록 16로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7-04-18	2018-03-28

6.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3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18-4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3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

1. 제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일자: 2018. 3. 30.
3. 처분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고기간: 2018. 3. 30. ~ 2018. 4. 13.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일
일 반 음식점	2013- 0199763	정성식당	김**	논현로 42, 2층 205호 (논현동, 제일프라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7-11-07	2018-03-30

6.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032)453-2623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8-4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3월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154번길 69-227 외 5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641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154번 길	69- 227	2009. 11.16.	소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40m지점에 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3.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로154번길 69-227 기초구간에위치하여69-227를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81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9 번길	25	2009. 11.16.	호구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400m지점 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3.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739번길 25 기초구간에위치하여25를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9-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641	2009. 07.06.	중국의 사신을 맞이했던 능허대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8. 03.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능허대로 641 기초구간에위치하여를건물번호로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7-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9 번길	107	2009. 11.16.	남동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00m지점 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3.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79번길 107 기초구간에위치하여107를건물번호로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88 외 6필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1 번길	26	2009. 11.16.	만수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0m지점 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3.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만수서로21번길 26 기초구간에위치하여26를건물번호로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70-3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80번 길	32	2009. 11.16.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00m지점에 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8. 03.2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백범로180번길 32 기초구간에위치하여32를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9-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641	2018.03.2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8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1번길	26-6	2018.03.2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89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1번길	26-4	2018.03.2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332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06번길	48	2018.03.2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3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06번길	46	2018.03.2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3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06번길	44	2018.03.2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70-3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15번길	24	2018.03.23.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